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6

발의연월일: 2021. 4. 26.

발 의 자:위성곤·고영인·이규민

기동민・류호정・양정숙

오영훈 · 최인호 · 서삼석

윤재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, 생활용품 11배,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.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.

특히,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,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어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,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3조및 제3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(이하 "물류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- 6.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제3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"제3호"를 "제4호"로 한다.
 - 4. 물류취약지역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	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		
산업발전법	산업발전법		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		
책무) ① ~ ③ (생 략)	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		
	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		
	는 물류취약지역(이하 "물류취		
	약지역"이라 한다)의 생활물류		
	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		
	<u>여야 한다.</u>		
제20조(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	제20조(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		
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	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8.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		
	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		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	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		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			
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			
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			

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 <신 설>

<u>6.</u> (생 략)

- 평가) ① (생략)
 -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3. (생략) <신 설>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~ ⑦ (생 략)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
-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- 제35조(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제35조(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 - 4. 물류취약지역 요금체계 개선 에 관한 사항
 - 5. -----제4호---
 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